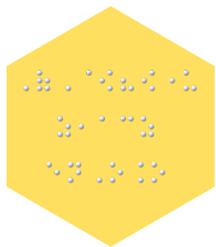


2023년도 1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및 배치 안내



특수교육대상자 장애유형



시각장애



청각장애



지적장애



지체장애



정서·행동장애



자폐성장애



의사소통장애



학습장애



건강장애



발달지체

한번에 보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과정

1. 특수교육대상자 진단·평가 의뢰

제출 서류	1. 진단평가 의뢰서 2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. 기초자료카드(학부모용, 담임교사용, 특수교사용)
추가 제출 서류 (해당자)	- 장애인등록카드(복지카드) 사본 - 최근 6 ~ 12개월 이내의 심리검사기록지

2.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

-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학생과 학부모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진단평가 참여

- 예상되는 장애 영역별 진단 평가 실시(지능검사, 적응 행동 검사, 정서행동검사, 기초학습능력 검사 중 필요한 검사 실시)

- 진단평가 담당교사가 학생 진단평가 시 장애 특성을 보이는 지 관찰, 학부모 상담

3.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

- 진단평가 결과(심의자료)를 검토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, 배치 유형(일반학교 일반학급/특수학급, 특수학교)을 심사

-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결과 내부결재

- 심사 결과 학교 알림, 통지서 배부

4. 특수교육대상자 선정·배치

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 내 선정 및 배치 되면?

- 개별화교육지원팀(학교장, 학부모, 통합학급 담임교사, 특수교사 등) 구성하여 학생의 장애특성에 맞는 개별화교육 수립

-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(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, 치료지원,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)



특수교육대상자 선정 Q&A

1. 장애인등록카드(복지카드)가 있는 학생이면 특수교육대상자로 자동 등록 되나요?

- 장애인등록카드를 지역 행정복지센터, 구청을 통하여 신청하여 발급되는 카드이고,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합니다.
 - 특수교육대상학생은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.
- 관할 부처가 다르므로 장애인등록카드가 있는 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자동 등록되지 않으며, 별도의 신청 과정이 필요합니다.

2. 특수교육대상자는 선정 되기 싫는데,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는 받고 싶어요.

-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만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(방과후교육활동비, 치료 지원 등)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3.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?

-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(신청) 과정에서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
특수교육대상자 배치 Q&A

1.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유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?

-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에 희망교육배치(일반학급, 특수학급)를 체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. 학부모, 통합학급 담임교사, 특수교사가 사전협의를 거쳐 신청서의 희망교육배치를 작성합니다.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배치 유형이 결정됩니다.
-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통하여 배치 유형 변경을 논의할 수 있으며, 일반학급-특수학급 유형 변경, 일반학교-특수학교 재배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2.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전학을 갑니다. 전학갈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전학을 가는 경우, 재배치 신청 서류(거주지 이전 증빙서류 또는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 등)를 해당 교육청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
- 전학 가는 지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학 처리가 완료됩니다.